

농업 잉여유출규모 추정*
-유출 노동력에 투입된 교육비를 중심으로-

朴 光 曙**

< 목 차 >

- I. 머리말
- II. 교육정도별 離農 勞動力의 추계
 - (1) 연령별 離農 勞動力의 추계
 - (2) 이농인구의 학교급별, 학년별 분포
- III. 학부모 부담 1인당 소요 교육비 추계
 - (1)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公教育費
 - (2)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 私教育費 추계
 - (3) 修學年數別 학부모 부담 1인당 소요 교육비
- IV. 분석대상 기간중 이농자의 修學年數 算定 및 修學年數別 1인당 교육비
 - (1) 재학 중 이농자의 修學年數 및 修學學年別 1인당 교육비
 - (2) 졸업 중퇴한 이농자의 수학학년 및 수학학년별 1인당 교육비
- V.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잉여 추정
- VI. 교육비를 통한 농업잉여의 유출과 농촌의 빈곤
- VII. 맺음말

* 이 논문은 1987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과 교수.

I. 머 리 말

일반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자본축적의 진행과 함께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의 인구는 증가하여 온다는 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자본축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960년대 이후부터 직접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수단, 즉 토지로부터의 분리에 따른 대규모의 이농이 전개된다.

이와같이 대규모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어 왔던 것은 자본축적 과정에서 자본의 일반적인 요구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우 그것은 자본의 독특한 자기축적 방식에 기인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에서부터 대외종속성을 가지 성격으로 하는 한국자본주의는 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착수와 함께 자본과 기술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은 수출지향형의 불균형공업화 정책 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을 자신의 축적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대농업 정책은 필연적으로 저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통하여 저임금 및 노동 공급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자본에 의한 저임금 기반 및 이를 위한 농촌노동력의 대량 유출의 강요는 대외종속하에 있는 자본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유출되기를 강요받은 노동력은 단순한 육체노동력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본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즉 현대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정력적인 젊은 노동력 중심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곧 농촌의 노동력은 자본에 의하여 유출되기를 강요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아가서 농민들의 비용으로 이들 유출 노동력에 대하여 자본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교육을 유출되기 이전에 이수하도록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농촌에서 유출된 노동력에 투입된 교육비는 거의 환류됨이 없이 그대로 도시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농촌에서 발생된 잉여의 교육비를 통한 도시로의 유출이며 이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1961년 이후 이농자들에게 투입된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농업잉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출된 노동력의 규모를 연령별로 추정하고 이들을 다시 재학중 이농자, 중퇴자 및 졸업자로 세분하여 추정한다. 그 다음에는 추정된 이들 이농자들을 각각 1961년 이후 수학년 수를 학교급별로 산출하고 또한 1961년 이후 학부모 부담으로 소요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학교급별로 산출하여 앞에서 산출한 1961년 이후 학교급별, 수학년수별 이농자수를 곱하여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농업 잉여의 규모를 산출할 것이다.

분석대상 기간은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됨으로서 농촌노동력의 유출이 대량으로, 그리고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1961년 이후부터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를 위한 조사가 가장 최근에 실시된 년도인 1985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노동력 이동 유형은 순수 농촌 지역인 面部 이하의 지역으로부터 邑部 이상의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간 이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¹⁾

-
1.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문제를 다룰 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郡部地域을 農村地域으로 간주하여 郡部地域으로부터 市部地域으로의 인구이동을 취급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面部地域이며 郡部地域내에 포함되어 있는 邑部地域은 오히려 都市的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가인구와 가장 근접한 인구규모를 가진 지역은 面部地域의 인구이며 더우기 그 변화추세까지도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面部地域만을 농촌지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II. 교육정도별 離農 勞動力의 추계

(1). 연령별 離農 勞動力의 추계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노동력을 추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은 통상 組成法(Age Component Method)이지만²⁾ 여기서는 인구이동 “要因”의 파악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尹汝德³⁾ 등이 사용한 보다 간편하게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t-1)기에서부터 t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面部地域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i번째 연령의 인구이동규모는 (t-1)기에 面部地域에서 살고 있던 i번째 연령의 인구규모에 기초하여 추계된 t기의 面部地域 豫想人口數로부터 t기에 조사된 실제의 面部地域 人口數를 빼어 추정한다. 이 때 t기의 面部地域 豫想人口數는 (t-1)기에서부터 t기까지의 기간동안에 面部 地域의 인구가 전혀 離村하지 않으면서 증가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기간중 전국의 i번째 연령의 인구증가율과 똑같은 率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계한다. 이와같이 하여 추계된 이농자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노동가능연령인 15세 이상의 인구만을 10년단위의 연령 계층으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 <표 1>이다. 이에서 보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유출된 인구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1976-80년간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상으로 보면 노동 능력이 가장 왕성한 20대와 30대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유출되고 있어 통상의 이농인구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
2. 성진근, "한국의 농촌과 도시 지역간 인구 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9쪽
 3. 尹汝德의, 「農村人口 移動에 관한 社會學적 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표-1> 연령 계층별 이동 인구 규모

단위 : 천명

연령계층별	1961-1966	1967-1970	1971-1975	1976-1980	1981-1985
15-19	262	280	316	560	284
20-29	513	499	402	699	436
30-39	229	270	464	548	397
40-49	162	130	244	315	352
50-59	96	75	180	199	214
60이상	71	57	157	185	226
계	1,333	1,310	1,763	2,506	1,910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각년도

(2). 離農人口의 학교급별, 학년별 분포

앞에서 추계된 연령별 이농 인구의 분포가 이 논문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그들이 이농하기 전 농촌에서 수학한 학교급별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이들을 다시금 재학자, 중퇴자 및 졸업자로 나누어 이들이 농촌에서 각급학교에 수학한 수학년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기간중 각각의 연령의 이농인구를 학교급별로 재학자, 중퇴자, 졸업자 및 불취학자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各期末(1966, 1970, 1985, 1980, 1985)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의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분포표에서 面部地域에 살고 있는 각 연령의 재학자, 중퇴자, 졸업자의 학교급별 인원수 및 불취학자수를 面部地域 해당 연령의 총인구로 나누어 이들이 해당 연령의 총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얻어낸다. 이 비중들을 해당 기간동안의 당해 연령의 이농인구에 곱하여 이들의 교육정도별 인구분포를 얻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추정된 매기간별 이농자의 연령별, 교육정도별자료는 재학자, 중퇴자, 졸업자별로 1961년 이후의 학교급별, 수학 학년별로 다시 분류되어야 한다.

<a> 재학중 이농자의 경우

먼저 "재학중 이농자"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문교통계연보』에서 보면 전국의 초, 중, 고학생들이 연령에 따라 학교급별, 학년별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이로부터 每期末 년도에 어떤 연령의 총인구중 초, 중,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년별 학생수 비중을 산출하여 낼 수 있다. 이농자들의 경우에도 각 연령층이 바로 이러한 비중과 똑같이 각급학교의 각각의 학년에 재학하였던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이 비중들을 앞에서 산출한 每期의 연령별, 학교급별 재학중 이농자수에 곱하여 이들을 연령별, 학교급별, 학년별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을 모든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들 전부 합산하면 초, 중, 고교에 재학중에 이농한 자들의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초급대, 전문대와 대학 이상에 재학중이었던 자들의 학년별 분포는 이들 학교의 특성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분포가 매우 넓고 따라서 이들을 연령별, 학년별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평균적으로 졸업 소요년수의 1/2 기간 동안을 재학하다가 이농한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의 농촌에서의 수학년수를 환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b〉 중퇴자 및 졸업자의 경우

앞의 (2)식에 의해 추정된 연령별 각급학교별 중퇴자 및 졸업자는 그들이 언제 수학하였던가에 관계없이 모든 중퇴자와 졸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60년대초 이후의 기간 동안 농촌에서 투입된 총교육비중에서 이농자들을 통하여 유출된 부분만을 추정하여 보려는 것이므로 1961년 이후에 修學한 결과 투입된 교육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등 이농한 졸업자, 중퇴자의 경우 그들이 수학한 전기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대상 기간인 1961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학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에서 추계된 각급학교를 중퇴하였거나 졸업한 모든 이농자중 1961-1985기간중 단 1년이라도 수학하였던 자들만을 다시금 추계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표-2〉이다. 〈표-2〉

는 1961-85기간중 각급학교에 재학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최대 연령표이다.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1961-66기간의 국민학교 중퇴자 및 졸업자가 이 기간중 단 1년이라도 재학하였을 것으로 상정가능한 최대 연령의 산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표에서 1961-66기간중 이농한 모든 연령층의 중퇴자나 졸업자중 18세까지만을 1961년이후에 단 1년 동안이라도 국민학교에 재학하였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표-2〉 분석대상기간중 각급학교에 재학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최대연령표

	1961-66	1967-70	1971-75	1976-80	1981-85
국민학교	18세	22세	27세	32세	37세
중학교	21	25	30	35	40
고등학교	24	28	33	38	43
대학교	29	36	41	46	51

그 이유는 센서스보고 자료에서 보면 국민학교 재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연령은 13세까지이며 따라서 13세까지가 1961년에 6학년에 재학하였다면 이 사람은 1966년에는 18세가 되었을 것이므로 1961-66기간의 중퇴자 및 졸업자중 18세까지만을 이 기간중 단 1년이라고 재학하였을 것으로 상정가능한 최대연령으로 삼은 것이다. 동일한 기간중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퇴자나 졸업자는 각각의 학교의 졸업소요년수만큼을 더하여 이들의 최대 연령으로 삼는 것이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이들은 재학중 입영 연령이 되고 있으므로 입영기간 3년과 대학졸업 소요년수 4년을 합계하여 이를 이 기간중 고교 재학가능 최대연령에 더하여 준 것이다. 다만 1960년 센서스 자료가 30세 이상은 매년 단위의 연령으로 구분되지 않고 10년단위의 연령 계층으로 묶여져 있어 연령단위로 파악 가능한 29세까지로만 하였다. 1961-66기간 이후의 각급학교 재학 가능 최대연령은 이러한 제1기의 각급학교 재학가능 최대연령에 각 기간의 소요년수만큼 계속 합산하여 최대 가능 연령을 얻은 것이다.

III. 학부모 부담 1인당 소요 교육비 추계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농업잉여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추제한 바와 같은 유출인구의 연령별, 학교급별 자료뿐만 아니라 농촌의 학부모부담으로 소요된 1인당 교육비 자료가 학교급별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된다. 직접교육비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교육비는 교육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 중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되고 공교육비는 다시급 정부부담, 재단부담 및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로 분류된다. 사교육비는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이외에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소요되는 일체의 학부모 부담의 비용을 의미한다. 한편 간접교육비, 즉 교육의 기회비용은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타직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회생된 소득으로 표현된다.⁴⁾

이 논문에서는 농촌에서 발생된 잉여가 자녀의 교육비로 투입되어 이들이 도시로 유출됨으로서 그들에게 투입된 교육비까지도 유출되는 문제, 즉 농촌의 잉여가 이농자에게 투입된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규모가 얼마인가를 추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육의 기회비용인 간접교육비 및 직접교육비중에서 정부부담과 재단부담의 공교육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공교육비중에서 학부모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만이 분석대상이 된다. 물론 학부모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학교급별 1인당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1).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公教育費

먼저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를 추계하여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교육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 측면에서 주로 분석되어 총체적인 교육비수준만을 문제로 삼고 그에 따라 이러한 총교육비추계에 주로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

4. 김영봉, 『우리나라 교육의 수요 형태 및 경제성장 기여 분석』, 연구 조사 보고 제 75-09권, 한국 개발연구원, 1975, 25-27쪽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문교예산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총액을 학교급별 구분없이 추정하는 방식을 주로 행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이다. 이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문교부통계연보”의 각급학교 학생 1인당 등록금 연액 또는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납입하는 등록금의 최고액수와 최저액수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등록금의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기성)회비, 실험실습비, 학생 자율적 경비 및 학생회비(학도호국단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로부터 각급학교의 학부모 부담 1인당 공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국민학생의 1인당 등록금 연액은 문교통계연보에서 제시되고 있는 최저액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面單位 이하의 농촌지역은 地域別等級이 가장 낮을 것이므로 제시된 것 중 최저액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⁶⁾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립 중.고교와 국.공립 중.고교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고 이들은 또한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 중.고교의 1인당 등록금 액수가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국.공립 중.고교 학생의 등록금 최고액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 액수가 사립 중.고교 학생 1인당 등록금 최고액수와 최저액수 및 국.공립 중.고교 학생들의 그것의 중간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5. 앞에서 본 김영봉(1975)의 경우나 남우현과 정창영(1973) 및 김영봉, 「맥긴」(1980)은 모두 이에 속한다.
 6. 물론 學校級地에 따라 전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보조를 받는 곳도 존재하고 제시된 최저액보다 훨씬 높은 등록금을 내는 級地도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面單位 以下の 농촌지역의 級地파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설사 파악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는 농촌지역 평균 등록금 액수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와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표-3> 각급학교 학생1인당 등록금 연액 추이(1985년 불변가격) (단위: 원)

년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1963	-	-	65,379	53,492	86,181	71,322	171,620	161,961
1964	21,412	15,894	48,565	39,735	64,018	51,980	133,544	120,329
1965	14,144	55,165	43,330	72,818	57,773	271,314	252,016	
1966	24,332	19,724	100,276	87,373	123,502	109,677	248,111	219,078
1967	22,877	18,544	98,440	87,775	121,967	107,236	295,329	268,795
1968	17,147	13,141	94,872	82,051	118,189	102,965	547,316	508,053
1969	17,943	14,189	131,381	119,369	171,922	157,658	656,306	612,012
1970	19,945	16,506	153,370	142,366	201,513	188,446	617,950	542,985
1971	21,582	14,937	206,139	190,949	221,772	203,734	735,380	650,570
1972	6,667	6,667	219,056	193,500	233,889	204,556	729,722	605,278
1973	6,234	6,234	204,831	186,130	218,701	196,468	808,597	664,182
1974	4,386	4,386	155,958	142,800	193,787	178,143	394,920	318,531
1975	3,467	3,467	173,100	162,699	238,024	225,657	957,526	882,693
1976	3,853	3,853	189,304	178,959	266,992	254,549	1,029,198	908,513
1977	4,402	4,402	212,882	202,414	307,962	295,270	1,140,929	961,579
1978	4,910	4,910	233,651	233,450	346,692	334,279	1,236,135	993,340
1979	5,152	5,152	241,310	232,109	367,256	356,106	1,268,609	965,603
1980	4,618	4,618	212,878	205,952	332,299	324,064	1,113,712	801,693
1981	3,878	3,878	186,591	180,734	298,050	291,073	941,161	695,332
1982	3,746	3,746	188,125	182,438	307,505	300,729	992,263	774,101
1983	3,780	3,780	198,201	192,439	331,524	324,675	1,164,126	1,081,301
1984	4,843	4,843	204,298	198,547	337,737	326,877	1,220,238	1,134,988
1985	5,040	5,040	208,500	202,800	341,000	334,200	1,083,000	1,001,250
평균	10,440	8,743	164,447	153,627	230,405	217,323	772,044	657,576

자료: 문교부, 문교 통계연보, 각년도에서 계산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고교생과 인문계 고교생의 등록금 액수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 경우에는 이들의 단순 평균 액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초급대.전문대 및 대학 이상의 학생의 경우에는 국.공.사립 및 인문계.자연계 최고 최저 등록금을 평균하여 사용하기로 한다.⁷⁾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이들을 1985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다음 이로부터 다시금 전기간에 걸친 평균액수를 얻어내어 이것을 각급 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표-3>이다. <표-3>에서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1985년 불변가격으로 환산된 기간중 평균적인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국민학생의 연간 1인당 공교육비는 신입생의 경우 10,440원, 재학생은 8,743원이며 중학생은 각각 164,447원과 153,627원, 고교생의 경우는 230,405원 및 271,323원이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772,044원과 657,576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2).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私教育費 추계

앞에서는 각급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추계하였으므로 다음에는 機會費用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부담 각급학교별 私教育費를 추정하여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私教育費라 함은 등록금 등과 같이 학생들이 납부하여 이 자금이 학교당국의 예산속에 계상되는 형태의 교육비가 아니면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학생들의 교재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피복비(체육복, 교련복 등), 교통비, 과외수업비, 의료비, 특수활동비, 숙식비, 학생용돈 및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된다.

7. 자료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당연히 보다 세밀한 자료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로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각급학교에 다니는 학생 및 이들의 학부모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로부터 추계할 수 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교육비 자료는 1961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것이어야 하므로 사실상 포본조사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에 이미 추계한 여러 학자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표-4> 조사자별 연간 학생 1인당 각급학교 사교육비 추정치 (단위 : 원)

학 교 급 별	1968 ¹⁾ (CERI)	1970 ²⁾ (MANDRI)	1972 ³⁾ (숙명여대)	1977 ⁴⁾ (배종근)	1982 ⁵⁾ (KEDI)	1984 ⁶⁾ (KREI)	기 간 평 균 ⁷⁾
국 교	6,718 (53,830)	6,788 (46,485)	18,595 103,306	29,392 (69,485)	129,583 (131,905)	-	82,084
중 학	15,477 (124,014)	19,734 (135,722)	39,035 (218,361)	128,800 (304,492)	163,283 (166,208)	97,800 (98,668)	160,750
고 교	24,616 (197,244)	27,060 (186,107)	80,148 (445,267)	219,293 (518,423)	219,005 (222,929)	326,900 294,568	
대 학	55,305 (443,149)	59,902 (411,981)	-	141,480 (334,468)	686,902 (699,208)	895,200 (903,148)	581,697

()안은 1985년 불변가격으로 환산된 수치임.

- 주 1). 중앙교육연구소(CERI), "연간 투입되는 교육비 총액 추정", 1969
 2). 인력개발연구소(MANDRI), "인력 개발 투자의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1972
 3). 숙명여대 학생생활지도연구소, "교육비 현황과 그 절감 방안", 1974
 4). 배종근, "교육투자의 적정화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1978
 5).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투자 규모와 적정 단위 교육비", 1982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가의 교육비 투자와 농촌 교육 개발", 1985
 7). 기간 평균치는 CERI 추계치와 KEDI 및 KREI 추계치의 전기간에 걸친 환산값에 대한 평균치임.

〈표-4〉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서 추계된 연간 학생 1인당 각급학교 사교육비 추정치이다. 이 표에서 보면 조사자마다 그 추계 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추계된 값도 그 추세에 있어 매우 폭이 크다. 이는 물론 각 조사자마다 연구방법이나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 추출된 표본의 크기 또는 여타의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최초의 추정치인 「중앙교육연구소」(CERI)의 추정치와 최후의 추정치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정치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 추정치의 1985년 불변가격 환산치를 이용하여 이 기간 동안의 각급학교 사교육비에 관한 指數的 成長率을 얻어낸다.

이와같은 방식에 의하여 얻어진 私教育費의 指數的 成長率을 1968년 이전의 기간인 1961년까지 그리고 최후의 연도인 1985년까지 연장시켜 적용하여 이로부터 매년의 각급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산출하여 이들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얻어진 각급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기간 평균 추정치는 앞의 〈표-4〉의 “기간 평균”의 값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국민학생의 경우 연간 1인당 사교육비는 1985년 불변가격으로 82,084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는 160,750원으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94,568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581,697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3) 修學年數別 학부모 부담 1인당 소요 교육비

지금까지는 학교급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를 公教育費(등록금)와 私教育費로 나누어 추계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놓은 것이 다음의 〈표-5〉이다. 이 표에서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나누어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만 하는 1인당 교육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분석 대상의 기간중 국민학교 학생 1명을 입학시킬 경우 연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는 1985년 불변가

격으로 92,524원이 소요되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90,82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학생은 신입생의 경우 325,197원, 재학생은 314,377원이, 고등학생은 신입생의 524,973원, 재학생의 경우에는 511,891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은 신입생이 1,353,741원, 재학생의 경우에는 1,239,2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학교급별 학부모부담 학생1인당 교육비 연액(1985년 불변가격)
(단위 : 원)

학교급별	1인당공교육비연액		사교육비연액	계	
국민학교	10,440	8,743	82,084	92,524	90,827
중 학교	164,447	153,627	160,750	325,197	314,891
고등학교	230,405	217,323	294,568	524,973	511,891
대 학교	772,044	657,576	581,697	1,353,741	1,239,273

자 료 : <표-9> 와 <표-10>에서 정리함.

한편 앞의 <표-5>를 이용하면 修學年數에 따라 학생 1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부모가 지불하여야만 하는 所要教育費 총액을 얻을 수 있다. 즉, 학생 1명을 국민학교까지 졸업시키기 위해 학부모는 총 546,659원을 지출하여야 하며, 중학교까지는 1,500,610원, 고등학교까지는 3,049,365원, 초급대와 전문대까지는⁸⁾ 5,642,379원을,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서는 총 8,120,925원을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8. 초급대학생과 전문대생의 교육비를 산출하여 낼 수 있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들은 대학생의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IV. 분석대상 기간중 이농자의 修學年數 算定 및 修學年數別 1인당 교육비

이 논문은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1960년대초 이후 농촌에서 투입된 교육비중 이농자를 통하여 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도시로 유출되었는가를 추정하여 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농자가 이농하기전 농촌에서 修學한 전기간 동안에 투입된 모든 교육비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61년 이후의 기간동안에 재학함으로써 투입된 교육비만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추계된 각 기간별 학교급별, 학년별 이농자를 다시금 1961년 이후의 기간동안에만 재학한 내용으로, 즉 우선 각 기간별 修學可能年數를 산정한 위에서 이러한 修學 期間 동안 이들 이농자의 학교급별, 학년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각 기간의 修學可能年數를 보기로 하자. 각 기간별 修學可能年數(T)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T = [(t-1)期末年度 - 1960年] + t期の 전기간 / 2$$

여기서 $[(t-1)期末年度 - 1960年]$ 은 1961년 이후부터 수학한 경우만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t$ 기의 전기간/2)는 문제의 기간중 평균적으로 그 기간의 1/2기간 동안만 재학하였던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1기인 1961-1966기간중의 수학가능년수는 3년이 되며 1967-70기간중에는 1967년 이전의 6년과 1967-70기간의 1/2에 해당하는 2년이 합계되어 8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여 1971-75기간의 경우에는 12.5년, 1976-80기간중에는 17.5년, 그리고 1981-85기간중에는 22.5년이 된다.

이러한 수학가능년수에 기초하여 각기간중 이농한 재학중 이농자, 중퇴 이농자 및 각급학교 졸업 이농자들의 학교급별 학년별 분포를 살펴 보기로 하자.

(1). 재학중 이농자의 修學 學年 및 修學 學年別 1인당 교육비

앞에서 산출한 각기간별 수학가능년수에 따라 재학중 이농자가 이농하기 전 1961년 이후 농촌에서 각급학교에 재학하였던 학년은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산출한다. 우선 산출된 각 기간별 수학가능년수의 기간 동안만 이들 이농자는 재학하였던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의 각 기간별 수학가능기간 동안 각급학교에서의 재학 학년은 학교급별, 학년별 재학중 이농자가 농촌에서 재학하였던 최종학교 최종학년으로부터 재학가능년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역산하여 가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수학가능년수가 3년인 1961-66기간중에 국민학교 3학년까지 재학하였다가 이농한 자의 경우는 그대로 국민학교 1, 2, 3학년에 재학하였던 것으로 되지만 4학년 재학중에 이농한 자는 최종 학년으로부터 재학 학년을 역산하여 수학가능년수 기간 동안 국민학교 2, 3, 4학년에만 재학하였던 것으로 되며 또한 5학년에 재학중 이농한 자는 3, 4, 5학년에만 재학하였던 것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4학년에 재학중 이농한 자의 국민학교 1학년은 수학가능년수가 3년밖에 되지 못하므로 결국 분석 대상 이전인 1960년에 재학하였던 셈이 되고 5학년 재학중 이농한 자의 국민학교 1, 2학년은 1959년과 1960년에 수학한 셈이 되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에 이농한 자는 분석대상 기간인 1961년 이후에는 중학 1, 2학년 및 국민학교 6학년만 재학하였던 것으로, 그러나 국민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분석 대상 기간 이전인 1956-60까지의 기간 동안에 재학한 것으로 되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제2기 이후의 전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예를 들어 수학가능년수가 8년이 되는 제2기인 1967-70 기간중에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 이농한 사람은 국민학교 전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하였던 것으로 계산이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 이농한 사람은 분석 대상의 수학가능년수 기간인 8년 동안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전학년 및 국민학교 4, 5, 6학년에만 재학하였던 것으로 되는 반면 이들의 국민학교 1, 2, 3학년은 분석대상 이전 기간인 1958-60년에 수학한 것으로 되어 이 논문의 분석으로부터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수학가능년수가 짧은 제1기(1961-1966)와 제2기(1967-1970) 및 제3기(1971-75) 동안은 학교급별에 따른 졸업소요년수 전기간 동안 모두를 분석 대상기간중에 수학한 것으로 산입시킬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수학가능년수가 긴 제4기(1976-1980) 또는 제5기(1981-85)의 경우에는 각

급학교의 졸업 소요년수 전기간 동안 모두가 분석대상 기간중 수학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6> 재학중 이농자의 각기간별 각급학교 재학년에 기초한 1인당 교육비 (1985년 불변가격) (단위: 원)

최종재학학년	1961-66	1967-70	1971-75	1976-80	1981-85
국민학교1학년	92,524	92,524	92,524	92,524	92,524
2	183,351	183,351	183,351	183,351	183,351
3	274,178	274,178	274,178	274,178	274,178
4	272,481	365,005	365,005	365,005	365,005
5	272,481	455,832	455,832	455,832	455,832
6	272,481	546,659	546,659	546,659	546,659
중학교1학년	506,821	871,856	871,856	871,856	871,856
2	730,401	1,186,233	1,186,233	1,186,233	1,186,233
3	953,951	1,408,086	1,500,610	1,500,610	1,500,610
고등학교1학년	1,153,727	1,842,232	2,025,583	2,025,583	2,025,583
2	1,351,241	2,263,296	2,537,484	2,537,484	2,537,484
3	2,684,360	3,049,365	3,049,365	3,049,365	3,049,365
초급대.전문대	2,377,523	3,947,274	4,310,581	4,403,106	4,403,106
대학교	3,104,905	5,095,442	5,504,442	5,642,379	5,642,379

한편 초급대와 전문대 재학중 이농한 자와 대학교 재학중 이농한 자의 경우 이들의 최종 재학 학년을 산정하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들은 평균적으로 초급대.전문대생은 1학년을, 대학생은 2학년에 재학중 이농한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의 각기간별 학교급별 수학학년을 앞에서의 방식대로 계산하였다.

이와같이 해서 얻어진 각기간별 수학가능년수 및 그에 의한 각 기간별 이농자의 각급학교 재학학년 자료와 학교급별 학부모 부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표-6>이다. 물론 이것을 계산할 때 각급학교의 1학년을 신입생의 등록금으로 계산하고 그 이외의 학년은

재학생의 등록금으로 계산하였음을 말할 것도 없다.

(2). 졸업·중퇴한 이농자의 수학 학년 및 수학 학년별 1인당 교육비

각급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농자가 농촌에서 이농하기전 각급학교에서 수학한 학교급별 재학학년을 산정하기 위한 각기간의 수학기능년수는 이미 앞에서 재학중 이농자의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수학기능년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에 기초하여 먼저 각급학교를 “중퇴”한 이농자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중퇴자들은 기본적으로 그의 최종학교 졸업 소요년수의 1/2기간만을 평균적으로 수학하였던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이농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국민학교를 3학년까지만 수학하고 중퇴한 것으로 되며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만 평균적으로 수학하고 중퇴한 뒤 이농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중퇴자의 이러한 총수학년수로부터 분석대상의 기간동안의 수학 학년만을 산정하여 내는 방식은 앞의 재학중 이농자의 학교급별 재학학년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즉, 앞에서 주어진 각기간별 수학기능년수의 범위내에서 최종 수학 학년으로부터 역산하여 분석 대상의 기간 동안에 각급학교에서 수학한 학년을 산출하도록 한다. 이와같이 해서 얻어진 수학 학년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학교급별 1인당 소요교육비를 보여주는 것이 <표-7>이다.

<표-7> 학교중퇴 이농자의 분석대상기간중 수학학년에 기초한 기간별 학교급별 1인당 소요교육비(1985년 불변가격) 단위: 원

학교급별	1961-66	1967-70	1971-75	1976-80	1981-85
국민학교	274,178	274,178	274,178	274,178	274,178
중 학교	618,627	1,029,045	1,029,045	1,029,045	1,029,045
고등학교	1,252,485	1,098,814	2,793,430	2,793,430	2,793,430
초 급 대	2,377,523	3,947,274	4,356,844	4,403,106	4,403,106
대 학교	3,104,905	5,095,720	5,504,442	5,642,379	5,642,379

주 1). 초급대 속에는 전문대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한편 각급학교를 "졸업"하고 이농한 사람들의 경우 분석대상의 기간중 이들의 각급학교에서의 재학학년은 그 자신의 최종 졸업학교의 마지막 학년으로부터 역산하여 앞에서 이미 가정하여 사용한 각기간의 수학기능년수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각급학교 수학기능년만을 분석대상의 기간중에 교육받은 것으로 하면 된다. 각급학교를 졸업한 이농자가 그들이 각급학교에서 수학한 년수에 기초한 1인당 교육비 자료는 <표-8>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8> 각급학교 졸업 이농자의 분석대상기간중 수학기능년에 기초한 각기간별 학교급별 1인당 소요교육비(1985년 불변가격) 단위: 원

학교급별	1961-66	1967-70	1971-75	1976-80	1081-85
국민학교	272,481	456,659	546,659	546,659	546,659
중 학교	953,951	1,408,086	1,500,610	1,500,610	1,500,610
고등학교	1,548,755	2,684,360	3,049,365	3,049,365	3,049,365
초 급 대	3,104,905	5,095,720	5,504,442	5,642,379	5,642,379
대 학교	3,717,819	6,934,392	7,801,334	8,120,920	8,120,920

주 1). 초급대 속에는 전문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V.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농업 잉여 추정

이제까지의 작업 결과를 이용하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대규모의 노동력 유출에 따라 결과적으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유출되어 버린 잉여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이제는 직접 산출하여 낼 수가 있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 추계된 제자료에 기초하여 추정된 교육비에 의한 농업 잉여 유출 규모의 학교급별 기간별 추정치를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표-9>이다. 이 표에서 보면 1961년부터 1985년까지 25년간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된 노동력과 함께 교육비로 유출된 농촌의 잉여는 1985년 불변가격으로 총 8조 6,359억 18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아직

농촌으로부터 노동력의 유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제1기(1961-66)에는 총유출액의 4.7%에 불과한 4,082억 93백만원이었으나 이농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제2기(1967-70)에는 제1기보다 기간은 2년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농업잉여의 규모도 제 1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212억 79백만원이나 되고 있다.

<표-9> 교육비에 의한 농업 잉여 유출 규모의 기간별 학교급별 추정치
(1985년불변가격) (단위; 백만원)

학교급별	1961-66	1967-70	1971-75	1976-80	1981-85	계
국민학교	167,698	206,523	298,183	489,082	331,637	1,493,123
중 학교	79,699	223,579	376,453	976,378	730,994	2,387,103
고등학교	99,920	254,021	388,522	1,305,763	1,202,441	3,250,667
초 급 대	12,525	43,711	70,026	154,747	192,373	473,382
대 학 교	48,451	93,445	141,964	311,171	436,612	1,031,643
계	408,293 (4.7)	821,279 (9.5)	1,275,148 (14.8)	3,237,141 (37.5)	2,894,057 (33.5)	8,635,918 (100.0)

()안은 총계에 대한 비중임.

이후 이러한 농업잉여의 유출은 계속 증가하여 제3기 (1971-75)에는 비록 제2기보다는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전체의 14.8%에 이르는 1조 2,751억 48만원이 되고 있고 이농이 더욱 본격화되는 제 4기(1976-80)에는 제 3기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3조 2,371억 41백만원으로 전체 유출액의 37.5%를 차지하는 각 기간중 가장 큰 액수의 유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그 동안의 대규모 이농의 결과 농촌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이농 인구 규모도 그 이전보다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제 5기에는 제 4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2조 8,940억 57백만원이 농촌으로부터 유출되었던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편 유출된 농업잉여를 학교급별로 보면 국민학교 정도의 학력보유자의 유출에 의한 농업잉여의 유출은 1조 4,931억 23백만원이고 중학교는 2조 3,871억 3백만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조 2,506억 67백만원이 되고 있고,

초급대를 포함한 대학 이상의 경우에는 1조 5,050억 25백만원이 되고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 또는 재학중에 이농하여 그와 함께 유출된 농업 잉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곧 현대적인 자본장비를 갖춘 공업부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어느 수준의 학력이어야 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력을 갖추기 위한 부담이 농민에게 짐지워져 실행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 교육비를 통한 농업잉여의 유출과 농촌의 빈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기간중에 농촌 노동력이 대규모로 유출됨으로서 이들에게 투입되었던 교육비도 함께 유출되었던 사실에 착안하여 교육비를 통한 농촌잉여의 절대적 규모 그 자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실제로 측정하여 보았다. 이와 같이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농업잉여의 규모 그 자체로서도 현재의 농촌 빈곤의 원인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다른 指標와 비교하여 보면 현재의 농촌 빈곤의 상대적 크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육비를 통해서 유출된 농업 잉여가 교육비로 투입되지 않고 그 크기만큼 그대로 농촌에 투자된다면 그것은 1985년 현재에 이르러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계측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 기간내에서는 매년도에 평균적으로 동일한 액수만큼의 잉여가 유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앞의 <표-9>에서 계측된 每期의 유출 농업잉여를 각기간내의 각년도에 동일한 액수로 분배한다. 이와같이 하여 분석대상의 기간중 매년도에 유출된 농업 잉여 자료를 얻고 이러한 매년도의 유출 농업 잉여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수익의 흐름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이를 측정하기 위한 수익율은 매년도의 국·공채의 명목수익율로부터 매년도의 消費者 物價上昇率을 빼 實質利率을 사용하였고 그 계산은 複利로 계산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얻어진 1985년 예상되는 수익 흐름의 추정치는 <표-10>과 같다.

〈표-10〉 교육비에 의해 유출된 농업잉여의 1985년 예상수익흐름
(1985년 불변가격)

기 간	유출된 농업잉여	1985년 예상수익
1961 - 66	408,293백만원	1,723,194백만원
1967 - 70	821,279	2,254,728
1971 - 75	1,275,148	2,650,964
1976 - 80	3,237,141	5,504,023
1981 - 85	2,894,057	3,620,058
계	8,635,918	15,752,967

자 료 : 앞의 〈표-20〉 및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이에서 보면 제1기(1961-66)에 농촌으로부터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농업 잉여 4,082억 93백만원이 전혀 유출되지 않고 전액 그대로 농촌에 투자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1985년에는 1조 7,231억 94백만원의 수익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와같은 유출된 농업잉여의 1985년 예상 수익의 크기를 기간별로 보면 유출된 농업잉여의 규모가 가장 컸던 제 4기(1976-80)의 예상수익의 크기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기간중 유출된 농업잉여의 1985년 예상수익 흐름의 합계는 총 15조 7,529억 67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액수는 1985년의 농림수산업 GNP가 10조 1,580억원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교육비를 통해 유출된 농업 잉여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만일 교육비를 통한 이러한 농촌의 잉여가 도시 부문으로 전혀 유출되지 않고 이들 모두가 농업 부문에 전액 생산적인 투자로만 전환되어 이들이 최소한 실질 이자율의 크기만큼의 수익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1985년의 농림수산업 GNP는 실제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가호당소득의 경우에는 1985년의 5,736,246원보다 훨씬 더 큰 8,179,667원(1985년 현재 농가 호수는 1,926천戶)의 추가 소득을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농가 소득도 역시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게 할 것이다.

VII. 맺 음 말

지금까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진행됨과 함께 교육비로 이들에게 투입되었던 농촌의 잉여도 동시에 도시로 유출되었던 사실을 실증적으로 추계하여 보았다. 그 추계 결과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8조 6천 억원 이상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것이 만일 농업부문에 전액 투자되어 실질이자율 수준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것은 15조 75백억원 이상의, 따라서 농가호당 연간 800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금액이었다. 특히 1985년 당시의 농가호당 소득이 573만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농촌의 빈곤은 바로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농업잉여가 교육비등의 형태로 유출되었던 결과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농촌의 빈곤은 이러한 잉여의 유출이 바로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그러한 대규모의 잉여 유출을 유도하였던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와 그에 따른 독점자본의 축적 방식 때문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현재의 농촌 빈곤은 저임금 기반에 기초한 불균형 공업화 정책에 의한 도시-농촌의 격차 심화, 그에 따른 도시로의 대규모 이농, 그 결과로서의 교육비등을 통한 농업잉여의 대규모 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여 주는 바는 현재의 농촌의 열악한 경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제라도 지금까지와는 반대방향으로 비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농촌으로 투입하여 농업에서의 확대재생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의 당위성은 넓게는 모든 국민경제가 목표로 하는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그 첫번째 조건으로서의 식량 자급을 위한 정책이 이제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함과 함께 식량 자급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이 전국민의 반도 먹여 살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그 동안의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더욱 심화시켜 주게 하는 요인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비록 농업부문이 그 생산탄력성과 소득탄력성에 있어 여

타의 비농업부문에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립경제라는 대의명분을 위한 적극적인 農業回生政策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경제통계연감』,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주요경제지표』. 1985
- 농림수산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농업센서스』, 1960, 1970, 1980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년도
- 김영봉, 『우리나라 교육의 수요 형태 및 경제성장 기여 분석』, 연구조사보고 제75-09권, 한국개발연구원, 1975
- 김영봉, N.F. 맥진,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1980, 한국개발연구원
- 남우현, 정창영,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조사보고 15권, 한국개발연구원, 1973.
- 배종근, 『교육투자의 적정화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78
- 성진근, 『한국의 농촌과 도시지역간 인구 이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8
- 숙명여대 학생생활지도연구소, 『교육비 현황과 그 절감 방안』, 1974
- 윤여덕 외, 『농촌인구 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구보고 6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 이용만 외, 『농가의 교육투자와 농촌 교육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 인력개발연구소, 『인력개발 투자의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1972
- 중앙교육연구소, 『연간 투입되는 교육비 총액 추정……1968년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54집, 1969